# 대한민국정부



제18534호 2015. 6. 17.(수)

(이면 계속)

###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646호(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0호(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4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1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7
○국방부고시제2015-182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8
○환경부고시제2015-80호(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6호(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9호(상주∼영천 고속도로 토지세목조서)	29
○해양수산부고시제2015-65호(항만 기본계획 변경)	36
○문화재청고시제2015-64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36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5호(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	- 37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국적상실)·····	38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국적상실)	38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0호(국적상실)·····	3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9호(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3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1호(도로구역결정〈변경〉)	3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6호(도로구역결정〈변경〉)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6호(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2호(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3호(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5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9호(사설항로표지 폐지)	5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5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9호(항로표지 현상변경)	5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사(사설항로표지 신설)	5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1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59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후 2100-3345, 2100-3346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2호(하천수사용 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9호(하천수사용 허가)·······5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1호(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60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97호(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6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98호(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6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4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0호(전자금융업 등록)65
○교육부공고제2015-106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5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36호(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66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5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68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8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농촌진흥청공고제2015-158호(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9
○농촌진흥청공고제2015-159호(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0
○산림청공고제2015-101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
$\bigcirc$ 산림청공고제 $2015-102$ 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langle$ 안 $\rangle$ 입법예고) $\cdots\cdots 72$
○병무청공고제2015-35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72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54호(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13호(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117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14호(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1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1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129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5-2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13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8호(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132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공시송달)····· 133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5-528호(대기측정대행업 변경등록)······ 134
[상 훈]
○서훈(산업통상자원부)····································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 134

### 국 무 총 리 훈 령

#### ●국무총리훈령 제646호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6월 17일

국 무 총 리인

####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 호의 인양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이하 "세월호"라 한다)의 인양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세월호 인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3. 세월호 인양을 위한 계약 체결
- 4. 세월호 인양 공정(工程) 및 안전 관리
- 5.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실종자 유실방지
- 6.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 7. 세월호 선체의 사후 활용에 관한 업무
- 8.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 ④ 추진단에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세월호 인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인양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세월호 인양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인양 추진단을 두고, 세월호 인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필요한 재원 확보, 인양 계약의 체결, 인양 공정(工程) 및 안전관리, 인양 과정에서의 실종자 유실방지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을 두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하며, 추진단에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안 제6조 및 제7조)

- 1)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 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고 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제3항 및 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제시, 공급자 선정·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계약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 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

- 제5조(제안요청서 준비)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발주 요구사항을 상세하 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 및 변경)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급자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 ② 발주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관리)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적용기준에 따라 수립한 상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기획 및 예산편성,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단계별 절차를 수행·관리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 제9조(합동검토)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리)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수 및 종료)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 제12조(성과관리)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 사업기간 산정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개정 고시 제4조의2제4항의 후단 개정 규정은 이고시 시행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전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및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등 기준 및 대상,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 과 같다.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다.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 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 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 억원 이상으로 한다.
-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 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 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 ●국방부고시제2015-182호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1-29~30호, 제2014-57호
-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 1. 사업의 명칭: 제39사단 이전사업
-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변경 전	변경 후
제39사단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 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 외
이전사업	2,301필지 / 5,067,403㎡	2,298필지 / 5,054,263㎡

- 4. 사업시행기간: '10. 6. 1. ~ '15. 6. 30.
-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
  - 나.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부대협력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 225-2693]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15-8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5-5호, 2015. 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